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3%이내	0.55	0.15	0.57	0.7841	110	194	283	473	1,0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70	0.30	0.73	0.8500	87	179	275	481	1,096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 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 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15%]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5/08/23 ~ 2026/08/22	2024/08/23 ~ 2026/08/22	2023/08/23 ~ 2026/08/22	2021/08/23 ~ 2026/08/2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09-11	23.13	16.43	0.00	0.00	16.0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9-13	22.69	16.09	0.00	0.00	15.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9-11	23.06	16.40	0.00	0.00	16.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9-13	0.00	0.89	0.00	0.00	5.28
수익률 변동성	2023-08-23	9.85	8.90	0.00	0.00	8.54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_혼합)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수현	1982	책임 (팀장)	14	2,712	16.02	13.63	14.31	12.37	10년 5개월
권순규	1995	부책임 (대리)			14.00	-			2년 1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IS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 투자 위험	<table> <tr> <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 <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 <td>재간접 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ETF의 과세처리 방법은 상장시장, 투자대상 등에 따라 상이하여 편입하고 있는 ETF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상장폐지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 달성이 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 <td>환율변동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헤지비용은 해외 투자자산의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 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헤지비용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 헤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환헤지비용이 목표환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어 목표 이상의 환율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td></tr>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ETF의 과세처리 방법은 상장시장, 투자대상 등에 따라 상이하여 편입하고 있는 ETF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 달성이 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헤지비용은 해외 투자자산의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 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헤지비용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 헤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환헤지비용이 목표환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어 목표 이상의 환율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ETF의 과세처리 방법은 상장시장, 투자대상 등에 따라 상이하여 편입하고 있는 ETF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 달성이 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헤지비용은 해외 투자자산의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 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헤지비용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 헤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환헤지비용이 목표환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어 목표 이상의 환율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6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9월 9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			

	판매경로	(C)	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 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 투자자 등(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한다)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m)